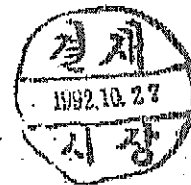


'93년 청소년 독서실 운영지침 수립(안)

1992. 10.

965



青少年 課長	家庭福祉 局長	副市長	市長	決裁 日字

內務局長
行政課長

김해은
부장

가정복지국 청소년과

청소년독서실 운영지침

19 9 29 2019

서울특별시

'93. 청소년 독서실 운영지침 수립 (안)

저소득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건립한 청소년 독서실의 운영지침이 '86년 수립되어 현재까지 기본지침으로 운영되어 온 바, 현실여건에 맞지 않고,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수정, 보완하여 청소년 독서실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

독서실설치현황

시·강

'92. 9. 기준

계	청소년독서실		복 합 시 설			기 타	
	직 영	위 탁	청소년회관	사회복지관	구민회관	도서관	진행
193	29	68	5	31	8	22	30

개 선 사 항

지침사항 \ 구분	현 행	수정 . 보완	비 고
관리·예산지원체계	서 울 시	각 구	
위 탁 체 선 점	단체 . 개인	청소년 관련단체	
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	-	신 설	
종사자 자격요건	-	지도교사자격요건신설	
종 사 자 보 수	단일호봉제 공무원보수규정중 일부 준용	호봉제 인정 사회복지시설직원 보수규정 준용	

세부개선내용

1. 관리, 예산 지원규정

- '86. 청소년 독서실 운영지침은 독서실 관리 및 예산지원 체계가 서울특별시 시장하에 있었으나,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이후 실질적으로 독서실 지도, 감독 및 예산편성·지침사항이 구로 이관되었음.
- 따라서 운영지침상 서울특별시시장의 독서실관리 및 예산지원규정은 구청장으로 수정

2. 위탁체 선정

- '86년 지침은 위탁체를 종교법인, 청소년 유관법인체 등으로 애매모호하게 표현하여 청소년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삼법인, 임의단체 또는 개인이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
- 위탁체의 범위를 청소년 관련 법인 및 공법인으로 제한함으로써 양질의 위탁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수정

3. 종사자 자격요건 신설

- 지도교사의 자격요건을 신설,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지도 및 상담이 내실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완

4.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

-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야간공부방의 운영이 '87년부터 시행됨으로써 '86년 지침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
- '93년 지침에는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야간공부방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유도